

업 무 방 법 서

제 정:1994.11. 5	11차개정:2005. 7.27	22차개정:2024. 6. 10
1차개정:1996. 9.17	12차개정:2005. 9.29	
2차개정:1996.12.31	13차개정:2006.12.26	
3차개정:1997. 6.20	14차개정:2007.11.22	
4차개정:1997.12.31	15차개정:2008. 5.23	
5차개정:1998. 7. 1	16차개정:2010. 1. 5	
6차개정:1998.10.23	17차개정:2010. 7. 6	
7차개정:2000. 2. 8	18차개정:2012. 1.10	
8차개정:2001. 7.26	19차개정:2015. 3. 6	
9차개정:2003. 3.29	20차개정:2020. 6. 16	
10차개정:2005. 3.30	21차개정:2024. 4.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업무방법서(이하 “방법서”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업무방법서)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처리의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방법서에서 “기업”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방법서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9.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 연기금 관리자
 12.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③ 이 방법서에서 "비상위험"이란 외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금지, 거래 상대국의 무역금지·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④ 이 방법서에서 "신용위험"이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의 당사자가 파산, 지급불능, 지급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⑤ 이 방법서에서 "영업위험"이란 수출품 및 수입품의 가격변동, 시장개척이나 수출촉진활동 비용의 회수불능, 수출(매출 포함)부진 등 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⑥ 이 방법서에서 "이자율변동위험"이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말한다.
 - ⑦ 이 방법서에서 "환변동위험"이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말한다.
 - ⑧ < 2012.1.10 삭제 >
 - ⑨ 이 방법서에서 "신뢰성"이란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⑩ 이 방법서에서 "신뢰성상실위험"이란 부품·소재의 결함 등 신뢰성 상실로 수요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부품·소재기업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에 따른 손실위험을 말한다.
 - ⑪ 이 방법서에서 "산업설비" 또는 "플랜트"란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 담수화설비 등과 같이 발주자가 사업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최종 생산단위를 말한다.
 - ⑫ 이 방법서에서 "예정보험계약"이란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등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를 확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한 보험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통지한 때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⑬ 이 방법서에서 "포괄보험"이란 공사와 보험계약자가 부보대상거래를 정하여 보험계약자는 해당거래 전부를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공사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인수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제3조(방법서의 변경) 이 방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무역보험요율서) 공사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그리고 신뢰성보장사업의 종류별로 보험(보증)료율을 정한 무역보험요율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방법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방법서가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이를 정한다.

제2장 무역보험

제6조(무역보험의 종류) 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무역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또는 임대료(이하 "수출대금"이라 한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인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대출원리금 또는 수출대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
2. 기업이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대출, 유가증권·채무증서·채권의 매입 또는 인수 등)을 제공한 후 원리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중장기수출보험"
3. 기업이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그 밖의 물품 및 용역수출과 관련하여 결제조건이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방식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동 수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입된 장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해외공사보험"
4. 기업의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그 밖의 물품 및 용역수출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 등에 수반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
5.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해외투자에 따른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외투자 또는 금융계약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 이행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해외투자보험"
6. < 2012.1.10 삭제 >
7. < 2012.1.10 삭제 >
8. 제2호의 금융계약에 따라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이자율변동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회수하는 "이자율변동보험"
9.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환변동위험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회수하는 "환변동보험"
10. < 2012.1.10 삭제 >
11. 기업이 시스템통합·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산업재산권 등 기술제공, 게임·영화·캐릭터·애니메이션·모바일·방송 등 문화 콘텐츠, 컨설팅 및 순수 엔지니어링, 관광, 운송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

은 손실을 보상하는 “서비스종합보험”

12. 금융기관이 외국인(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금융기관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역보험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대출, 유가증권·채무증서·채권의 매입 또는 인수 등)을 제공한 후 원리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해외사업금융보험”
13. < 2012.1.10 삭제 >
14. 주요자원, 소재·부품·장비 및 그 밖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품 등의 수입을 위해 기업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소재·부품·장비 및 그 밖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품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보험”
15. 수출기반 조성을 통해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상환기간 2년 초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기반보험”
16. 「무역보험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거래로서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인 매출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이 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계약대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대출원리금 또는 계약대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글로벌매출보험”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② 무역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비상위험, 신용위험과 영업위험, 이자율변동위험, 환변동위험 등으로 하며, 보험의 종류별로 담보하는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공사가 보상할 손실은 제2항에 따라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며, 보험의 종류별로 보상할 구체적인 손실의 범위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④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⑤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손실액에 공사가 별도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의 보상할 손실 및 이익회수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금과 이익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무역보험료율) 무역보험료율을 정할 때에는 국가신용도, 보험기간, 결제조건 등 위험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할인 또는 할증료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정보험계약) ① 공사는 수출보증보험에 대하여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증대되었거나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괄보험의 운영) ① 공사는 무역보험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또는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종목의 선정, 포괄보험에 관한 약정체결 등 세부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지역별·국별인수방침) ① 공사는 지역별·국별인수방침 등 무역보험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수방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인수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손실방지경감조치) ① 공사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실방지경감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손실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금의 가지급) 공사는 무역계약 등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고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대위)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한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에 의한 권리행사)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건에 관한 채권행사를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채권행사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14조에 따른 권리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제16조(회수의무)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수된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가 지시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금의 반환) 공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채권의 보전) 공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 제3항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신용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제19조(신용보증의 종류) ① 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지원자금을 대출(어음할인 또는 지급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대외무역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국내 기업이 외국 정부 등(외국의 공공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부간 수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② 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은 기업이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어음할인 또는 지급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제20조(보증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제19조에 따라 기업의 채권자(「대외무역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외국 정부 등을 포함하며, 이 장에서 같다)와 수출신용보증계약 또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증대상채무 등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은 기업의 주채무와 그와 관련한 종속채무로 한다. 다만, 종속채무의 범위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④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할 대위변제금은 보증금액 중 보증채무이행 전까지 상환 또는 지급받지 못한 주채무 잔액과 관련 종속채무로 한다.

제21조(구상약정) 공사는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기업과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구상권의 행사 및 유예)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인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여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상권 행사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구상채무의 감면) 구상채권의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구상채권상각) 공사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 및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비용 중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각처리한다.

제24조의 2(상각채권의 매각) 공사는 상각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에 관하여 이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방법서 중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신뢰성보장사업

제26조(신뢰성보장사업의 목적) 공사는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그리고 국산 부품·소재기업의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뢰성보장사업을 수행한다.

제27조(부품·소재신뢰성보험) 공사는 제2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 등이 제조·판매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상실위험으로 국내 부품·소재기업 등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는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을 운영한다.

제28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공사는 부품·소재기업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구체적 내용과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 보상한

도(또는 보험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준용) 신뢰정보장사업에 관하여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제30조(신용조사) ① 공사는 무역보험 인수, 수출신용보증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조사는 국별신용조사와 상사신용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제31조(신용정보의 관리) 공사는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무역신용정보센터) 공사는 신용조사자료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무역신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무역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3조(기금의 관리 운용) 공사는 무역보험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방법서는 199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업무방법서의 폐지) 종전의 업무방법서는 폐지한다.
- ③ (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방법서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

이 방법서는 199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방법서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방법서는 199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 ① (시행일) 이 방법서는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운영세칙과의 관계) 운영세칙에서 이 방법서 시행이전의 방법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방법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5)

이 방법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방법서는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방법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방법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방법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 ① 이 방법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운영세칙과의 관계)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이 업무방법서의 개정에 따라 “단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선적후)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방법서는 200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방법서는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이 방법서는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이 방법서는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이 방법서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이 방법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이 방법서는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이 방법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이 방법서는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2020.6.16 삭제>